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4
----------	------

제출년월일 : 2011. 2.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입증지 납부 방법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
 - 당초 :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변경 :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나. 수입증지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수입증지 : 600원권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시스템은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계기 인영시에만 표시)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6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수입금의 정산) ①제4조의2,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에 있어서는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세 무 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세 무 과 장 주 성 현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세외수입담당 이 숙 표
	담 당 자 성명 · 전화	김 보 민 031)860-2185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증지요금 계기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리대장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u>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u>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u>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4. (생략)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제4조의2(<u>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u>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u>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u>계기,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시스템</u>은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계기,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시스템</u>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u>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u>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6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19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 사용수입금의 정산) ① (생략) ②<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u>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u>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u>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u> 사용수입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u>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u>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u>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u>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u>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u>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